

WTO 紛爭解決制度의 運營事例分析

朴魯馨*

-
- I. 분쟁상황 개관
 - II. 분쟁해결방식
 - III. 분쟁해결절차 활용상황
 - IV. 제소사유와 분쟁대상인 대상협정
 - V. 분쟁해결제도의 유용성
 - VI. 결 론
-

I. 분쟁상황 개관¹⁾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가 1995년 출범한 지 5년 가까이 경과하고 있다. GATT 1947 체제와 비교하여 WTO의 가장 큰 장점은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이다. WTO 체제가 종래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규범에 더하여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자규범을 포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의 실제적 근간을 마련하였지만, 통상에 있어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WTO의 다자무역 체제는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는 WTO 체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아래에서 1995년

*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1) 본고의 각종 통계적 분석자료는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의 'WTO 분쟁사례 DB'에 근거하였으며, 현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의 LL.M.과정에서 통상법을 전공하고 있는 박영덕 군의 도움이 많았음을 밝힌다. 박노형, 1999: 본고에서 제소국 기준의 '분쟁사건'(dispute case)과 피소국 기준의 '분쟁사안'(dispute matter)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예컨대 미국의 개질된 일반 가솔린에 대한 표준(DS 2, 베네주엘라의 제소; DS 4, 브라질의 제소) 사건은 제소국의 입장에서 2개의 분쟁사건이지만, 피소국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분쟁사안이다. 또한 본고에서 WTO 협의요청과 제소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의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사례를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한다.

1999년 6월 1일 현재 WTO에 173개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가 요청되었으며, 이 173개 분쟁사건의 42%에 해당하는 71개의 분쟁사건이 이미 해결되었다.

1. 제소상황

WTO에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 (이하 '제소국'이라 함)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Quad 그룹 (미국, EC, 일본, 캐나다), 기타선진국,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및 공동제소의 7가지 경우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I 참조] 1999년 6월 1일 현재 제소된 분쟁사건은 제소국의 입장에서 미국 (54개), EC (45개),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 (35개), 캐나다 (13개), 기타선진국 (12개), 일본 (7개) 등의 순서이다.

제소상황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173개 분쟁사건 중에서 선진국이 76%에 해당하는 131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21%에 해당하는 37개, 그리고 기타 (공동제소)가 3%에 해당하는 5개를 차지하였다. 특히 Quad 그룹이 전체 173개 분쟁사건 중에서 69%에 해당하는 119개를 차지하여 WTO 분쟁해결제도의 사용이 Quad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공동제소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제소²⁾와 개도국들의 공동제소³⁾로 구분될 수 있다. [표 II 참조]

2) DS16, 27, 35, 158.

3) DS58.

표 1. 제소국별 분쟁상황 (1999. 6. 1 현재)

분쟁상황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선진국	개도국 (한국) ^a	공동제소	제소합계	비율	
해결된 분쟁사건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PR 및 ABR 채택	10	2	3		7	2	24	14%	
		PR 채택 (상소없음)	2	2		2	1 (1)		7	4%	
		소계	12	4	3	2	0	8 (1)	2	31	18%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	양자간 해결 ^b	11	7	3	1	4	9 (1)	1	36	21%
		진행이 중지된 사건 ^c			1			1		2	1%
		패널권한의 소멸 ^d		1						1	1%
		기타							1	1	1%
		소계	11	8	4	1	4	10 (1)	2	40	24%
소계	23	12	7	3	4	18(2)	4	71	42%		
진행중인 분쟁사건	협의요청	22	19	4	2	5	17	1	70	40%	
	패널요청	4	1			1			6	3%	
	패널 설치되었으나 구성 전	1	1						2	1%	
	패널 검토	1	12	1	2	1	1		18	10%	
	패널보고서 회람	2				1			3	2%	
	상소통고	1		1			1		3	2%	
	상소기관 검토									0%	
	상소보고서 회람									0%	
	소계	31	33	6	4	8	19	1	102	58%	
제소 합계 ^e		54	45	13	7	12	37 (2)	5	173	100%	
비율		31%	26%	8%	4%	7%	21%	3%	100%	-	

[범례] PR : 패널보고서 (panel report)

ABR : 상소기관보고서 (Appellate Body report)

Quad 그룹 : 미국, EC, 일본 및 캐나다

기타선진국 : 호주,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헝가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터키의 10 개국으로서, OECD의 29 개 회원국에서 Quad 그룹, 한국 및 멕시코를 제외한 9 개국과 OECD 비회원국인 슬로바키아공화국을 포함함

개도국 : Quad그룹과 기타선진국을 제외한 WTO회원국

공동제소 : 둘 이상의 WTO회원국의 제소

a 개도국 중 한국의 분쟁상황은 괄호로 표기함

b 양자간 해결방식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의 공식비공식 통고와 패널설치요청 철회 등으로 인해 분쟁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포함함

c 진행이 중지된 사건은 패널설치 후 패널이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협의 요청 후 제소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장기간 없는 경우를 포함함

d 패널권한의 소멸에 의한 해결방식은 패널활동의 정지가 1년을 경과하여 패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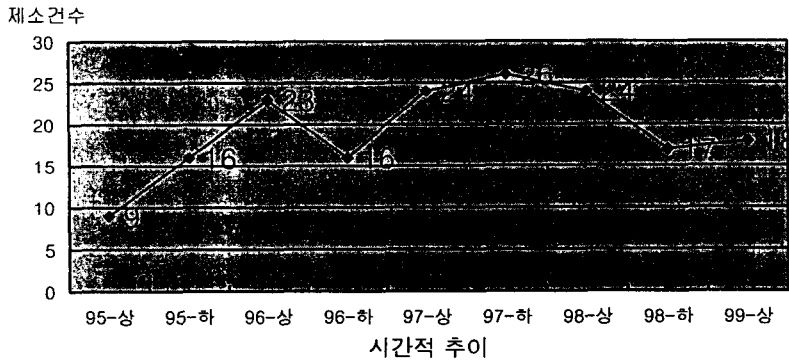
e 섬유의류협정 8.10조 (섬유감시기관의 추가적 권고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의 회원국의 GATT1994 XXIII:2조 원용)에 따라 분쟁해결양해 4.4조에 의하지 않고 패널설치를 요청한 2건 (DS32, DS33)도 제소 합계에 포함함

표 II. 공동제소 분쟁사건 (1999. 6. 1 현재)

문제된 상품/조치	공동제소국	피소국	사건명
새우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미국 (DS58)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농업보조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태국	헝가리 (DS35)	농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바나나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EC (DS16)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
	미국,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EC (DS27)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
	미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EC (DS158)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 (II)

한편, WTO에 대한 협의요청의 시간적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WTO의 출범 후 6개월 단위로 평균 약 20개의 협의가 요청되어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트 I 참조] 특히 1997년 하반기에 26개의 협의가 요청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이 제소한 2개⁴⁾도 동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차트 I. 제소의 시간적 추이(1999. 6. 1 현재)



2. 피소상황

1999년 6월 1일 현재 피소된 분쟁사건은 피소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 (50 개), EC (41 개), 미국 (33 개), 기타선진국 (16 개), 일본 (12 개), 한국 (11 개), 캐나다 (10 개)의 순서로 많았다. [표III 참조] 피소상황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전체 173 개 분쟁사건 중에서 선진국이 65%에

4)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DS89)와 미국의 한국산 1메가바이트 이상의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DS99).

해당하는 112 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35%에 해당하는 61 개를 차지하였다. 특히 Quad 그룹이 전체 173 개 분쟁사건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96 개를 차지하여 Quad 그룹이 제소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피소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uad 그룹 중에서 특히 EC가 미국의 33 개보다 높은 41 개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피소되었음은 특기할 만하다.⁵⁾

표 III. 피소국별 분쟁상황 (1999. 6. 1 현재)

분쟁상황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 선진국	개도국 (한국)	피소 합계	비율	
해결된 분쟁사건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PR 및 ABR 채택	5	7	1	4	1	6 (2)	24	14%
		PR 채택 (상소없음)	1			1		5	7	4%
	소계		6	7	1	5	1	11 (2)	31	18%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	양자간 해결	6	6		4	6	14 (3)	36	21%
		진행이 중지된 사건		2					2	1%
		패널권한의 소멸	1						1	1%
		기타		1					1	1%
		소계	7	9	0	4	6	14 (3)	40	24%
	소계		13	16	1	9	7	25 (5)	71	42%
	진행중인 분쟁사건	협의요청		12	21	3	3	5	26 (3)	70
패널요청		1	2			2	1 (1)	6	3%	
패널 설치되었으나 구성 전		1					1 (1)	2	1%	
패널 검토		6	2	3		1	6 (1)	18	10%	
패널보고서 회람				2		1		3	2%	
상소통고				1			2	3	2%	
상소기관 검토									0%	
상소보고서 회람									0%	
소계		20	25	9	3	9	36 (6)	102	58%	
피소 합계		33	41	10	12	16	61 (11)	173	100%	
비율		19%	24%	6%	7%	9%	35%	100%	-	

표범례: 표 I 참조.

5) EC에 대한 협의요청, 즉 제소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첫째, EC에 대한 제소건수는 EC 자체에 대한 제소뿐만 아니라 EC의 개별적인 회원국에 대한 제소도 별도의 사건으로 포함하였다. 둘째, EC에 대해 제소는 EC 및 관련 EC 회원국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1) DS 124 (EC)-125 (그리스); 2) DS82 (아일랜드), DS115 (EC); 3) DS62 (EC), DS67 (영국)-68 (아일랜드); 4) DS172 (EC), 173 (프랑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EC에 대한 제소건수는 동일 분쟁사안에 대해 중복적으로 계산되고 있어 실제의 피소건수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II. 분쟁해결방식

1. 분쟁해결방식 개관

(1) 개관

1999년 6월 1일 현재 WTO에 제소된 173개의 분쟁사건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71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WTO에서 분쟁이 해결된 방식은 패널 또는/및 상소기관(이하 '패널/상소기관'이라 함)의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과 분쟁당사국들 사이의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해결된 71개 분쟁사건 중에서 44%에 해당하는 31개가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고, 56%에 해당하는 40개가 협의 등 기타 방식에 따라 해결되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WTO의 분쟁이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협의 등 기타 방식으로 더 많이 해결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패널절차가 WTO 분쟁해결제도의 중심으로서 이해되고 있는데, 패널의 제3자 개입에 의한 경우보다 분쟁당사국들의 직접적인 해결이 보다 많으며 따라서 분쟁의 해결방식으로 더 우수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은 1) 패널보고서만의 채택에 의한 방식⁶⁾(이하 'PR 채택방식'이라 함)과 2) 상소기관보고서와 동 보고서에 의해 수정된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의한 방식⁷⁾(이하 'PR/ABR 채택방식'이라 함)으로 구분될 수 있다. 1999년 6월 1일 현재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개의 분쟁사건은 동일한 회원국에 대한 동일 쟁점의 사건들도 있어서 21개의 분쟁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IV 참조] 이 중에서 PR/ABR 채택방식이 24개로서 PR 채택방식의 7개보다 훨씬 많았다. [표VI 참조] 이 점에서 분쟁당사국들이 상소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분쟁해결양해 16.4 조.

7) 분쟁해결양해 17.14 조.

표 IV.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상황 (1999. 6. 1 현재)

분쟁 사안	DS 번호	제소국	피소국	채택된 보고서	사건 이름	쟁점인 규정
1	2	베네수엘라	미국	PR & ABR	개질된 일반 가솔린에 대한 표준	GATT I, III; TBA 2
	4	브라질				
2	8	EC	일본	PR & ABR	주류에 대한 세금	GATT III:2
	10	캐나다				
	11	미국				
3	18	캐나다	호주	PR & ABR	캐나다산 연어 수입금지	GATT XI, XIII; SPA 2, 5
4	22	필리핀	브라질	PR & ABR	건조된 코코넛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VI:3, VI:6(a)
5	24	코스타리카	미국	PR & ABR	면화 및 합성섬유 내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TCA 2.4, 6.2, 6.4, 6.6(d), 6.10
6	26	미국	EC	PR & ABR	육류 및 육류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호르몬)	GATT III, XI; SPA 2, 3, 5; TBA 2, AA 4
	48	캐나다				
7	27	미국, 멕시코,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EC	PR & ABR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에 관한 체제	GATT I, II, III, X, XIII; ILA 1, 3; GATS II, XVI, XVII; AA 불특정; TRIMS 불특정
8	31	미국	캐나다	PR & ABR	점기간행물에 관한 특정 조치	GATT III, XI
9	33	인도	미국	PR & ABR	편 모직 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TCA 2, 6, 8
10	44	미국	일본	PR	소비자 사전필름 및 용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III, XI
11	50	미국	인도	PR & ABR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TRIPS 27, 65, 70
12	54	EC	인도네시아	PR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GATT I, III; SCA 3; TRIMS 4
	55	일본				GATT I:1, III:2, III:4, X:3(a); TRIMS 2, 5, 4
	59	미국				GATT I, III; SCA 3, 6, 28; TRIMS 2; TRIPS 3, 20, 65
	64	일본				GATT I, III; TRIMS 2; SCA 3, 6, 28; TRIPS 3, 20, 65
13	56	미국	아르헨티나	PR & ABR	신발, 섬유, 의류 및 기타 항목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II, VII, VIII, X; TBA 2: CVA 1, 2, 3, 4, 5, 6, 7, 8; TCA 7
14	58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미국	PR & ABR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GATT I, XI, XIII
15	60	멕시코	과테말라	PR & ABR	멕시코산 포트랜드 시멘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	GATT 불특정; ADA 2, 3, 5, 7.1
16	62	미국	EC	PR & ABR	특정 컴퓨터 장치의 관세분류	GATT II
	67	미국	영국			
	68	미국	아일랜드			
17	69	브라질	EC	PR & ABR	특정 가공류 제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X, XXVII; ILA 1, 3
18	75	EC	한국	PR & ABR	주류에 대한 세금	GATT III:2
	84	미국				
19	76	미국	일본	PR & ABR	농산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XI; SPA 2, 5, 8; AA 4
20	79	EC	인도	PR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TRIPS 70.8, 70.9
21	99	한국	미국	PR	한국산 1메가바이트 이상의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	ADA 6: 11

[약어]

TBA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PA위생조치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TCA섬유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A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ILA수입허가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DA반덤핑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1994)
GPA정부구매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ROA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
SA세이프가드조치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3)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은 1) 양자간 해결, 2) 진행이 중지된 사건, 3) 패널권한의 소멸, 및 4) 기타의 4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V 참조] 1999년 6월 1일 현재 해결된 71개의 분쟁사건 중에서 56%에 해당하는 36개가 협의 등 기타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표VI 참조] 특히 해결된 71개 중에서 51%에 해당하는 36개가 양자간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었다. 따라서 양자간 해결방식이 WTO의 분쟁해결방식 중에서 가장 선호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양자간 해결방식은 분쟁당사국들의 '상호 합의된 해결책'(mutually agreed solution)의 통고⁸⁾ 및 패널설치요청 철회 등으로 분쟁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진행이 중지된 사건은 패널이 설치된 후 패널이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⁹⁾ 협의 요청 후 제소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장기간 없는 경우¹⁰⁾를 포함하며, 1999년 6월 1일 현재 2개에 불과하다. 패널권한의 소멸에 의한 해결방식은 패널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정지되어 패널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로서 1999년 6월 1일 현재 1개에 불과하다.¹¹⁾ 위의 3가지 방식 이외에 협의요청이 뒤이은 새로운 협의의 요청으로 소멸된 경우도 있다.¹²⁾

8) 대상협정의 협의와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은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과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분쟁해결양해 3.6 조.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통고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9) EC의 곡류수입품에 대한 관세(DS9, 캐나다의 제소).

10) EC의 쌀에 대한 수입관세 (DS17, 태국의 제소).

11) 미국의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에 관한 법(DS38, EC의 제소). 분쟁해결양해 12.12 조 참조.

표 V.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상황 (1999. 6. 1 현재)

사안	DS 번호	제소국	피소국	분쟁 해결 유형	국문 사례명	결정 규정
1	1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A2	올리에탈렌과 올리프로필렌 수입품에 대한 금지	GATT 불복정
2	5	미국	한국	A2	상품의 보존기간에 관한 조치	GATT III, XI: SPA 2, 5; TBA 2; AA 4
3	6	일본	미국	A2	미 무역법 301조, 304조에 따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GATT I, II
4	7	캐나다	EC	A2	가리비의 용량	GATT I, III; TBA 2
	12	페루				
	14	칠레				
5	9	캐나다	EC	B1	공류수입품에 대한 관세	GATT VII: CVA 불복정
6	13	미국	EC	A4	국물수입품에 대한 관세	GATT VII: CVA 불복정
7	15	EC	일본	A8	통신장비 구매에 영향을 주는 조치	GATT I: I, III-4, XVII: I(c)
8	16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EC	D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	GATT I, II, III, X, XIII; GATS II, XVI, XVII: IIA 1, 3
9	17	태국	EC	B2	쌀에 대한 수입관세	GATT I, II, VII: CVA
10	19	인도	폴란드	A2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한	GATT I, XXIV
11	20	캐나다	한국	A2	생수에 관한 조치	GATT III, XI: SPA 2, 5; TBA 2
12	23	멕시코	베네수엘라	A7	특정 유형항공권에 대한 반덤핑조사	불복정
13	28	미국	일본	A2	음반 보호에 관한 조치	GATT 불복정; TRIPS 14
14	32	인도	미국	A6	소년 및 여성용 모직코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TCA 2, 6, 8
15	35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태국	헝가리	A2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AA 3.3, Part V
13	36	미국	파키스탄	A2	의약품 및 농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TRIPS 27, 65, 70
17	37	미국	포르투갈	A2	산업재산권법상 특허권 보호	TRIPS 불복정
18	38	EC	미국	C	쿠비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에 관한 법	GATT I, III, V, XI, XIII; GATS I, III, VI, XVII
19	39	EC	미국	A5	EC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GATT I, II, XXII: DSU 3, 22, 23
20	40	EC	한국	A2	통신장비 정부구매분야에서의 법, 규정, 관행	GATT I, III, XVII
21	42	EC	일본	A2	음향녹음에 관한 조치	TRIPS 14.6, 70.2
22	43	미국	타키	A2	외국영화상영소득에 대한 과세	GATT III
23	49	멕시코	미국	A9	멕시코산 신선하고 냉장된 토마토에 대한 반덤핑조사	GATT VI, X; ADA 2, 3, 5, 6, 7.1
24	57	미국	호주	A3	섬유, 의류, 신발 수입신용계획	SCA 3
25	73	EC	일본	A2	항공 위성의 구매	GPA VI-3, XII-2, Annex I of Appendix I of Japan's commitments
26	74 102	미국	말리반	A2	돼지고기와 가금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III, XI: AA 4: IIA 1, 3
27	85	EC	미국	A2	섬유 및 의류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GATT III: TCA 2.4, 4.2, 4.4; ROA 4.2; TBA 2
28	86	미국	스웨덴	A2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TRIPS 50, 63, 65
29	89	한국	미국	A4	한국산 컬러TV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GATT VI: I, VI:6(a); ADA 1, 2, 3.1, 3.2, 3.6, 4.1, 5.4, 5.8, 5.10, 11.1, 11.2
30	91	호주	인도	A2	농산물, 섬유 및 공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GATT XI: I, XVIII: 11; AA 4.2: IIA 3
	92	캐나다			농산물, 섬유 및 공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GATT XI: I, XVIII: 11; AA 4.2: IIA 3
	93	뉴질랜드			농산물, 섬유 및 공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GATT XI: I, XVIII: 11; AA 4.2: IIA 3
	94	스위스			농산물, 섬유 및 공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GATT XI: I, XVIII: 11; AA 4.2: IIA 3
	96	EC			농산물, 섬유 및 공산물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	GATT XI: I, XVIII: 11; AA 4.2: IIA 3
31	106	미국	호주	A4	자동차용 가격의 생산자와 수출입자에게 제공된 보조금	SCA 3
32	119	스위스	호주	A2	공명된 목질없는 종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ADA 3, 5
33	123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A4	신발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GATT XIX: SA 2, 4, 5, 6, 12

12)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4개 회원국은 1995년 9월 28일 EC의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에 관한 체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는데(DS16), 이후 1996년 1월 21일 WTO에 가입한 에콰도르가 이들 제소국에 가세하여 총 5개 회원국이 1996년 2월 5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협의를 요청하였다. EC의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에 관한 체제'(DS27).

표범례

A: 양자간 해결

- A 1: 분쟁해결양해 4.7 조의 60 일간 협의기간 내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DSB에 통고된 분쟁사안
- A 2: 분쟁해결양해 4.7 조의 60 일간 협의기간 이후에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 DSB에 통고된 분쟁사안
- A 3: 만족스러운 합의에 관한 공동의견(joint comment)이 발표되었으나, DSB에 통고되지 않은 분쟁사안
- A 4: 제소국이 패널설치요청의 철회를 DSB에 통고한 분쟁사안
- A 5: 제소국의 패널설치요청 후 피소국이 문제된 조치를 철회 또는 폐지하자, 제소국이 패널 설치요청을 구하지 않겠다고 DSB에 통고한 분쟁사안(공식적으로 동 요청을 철회한 것은 아님)
- A 6: 패널이 설치된 이후 피소국이 문제된 조치를 철회 또는 폐지하자, 제소국이 패널의 추가적 조치의 종료를 DSB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분쟁사안
- A 7: 피소국이 문제된 조치를 철회 또는 폐지하자, 제소국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DSB에 일방적으로 통고한 분쟁사안
- A 8: 분쟁당사국의 분쟁해결에 관한 공식적인 통고는 없으나, 분쟁이 사실상 해결되었다고 WTO 사무국이 간주한 분쟁사안
- A 9: 제소국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DSB에 통고하지 않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분쟁사안
- B: 진행이 중지된 사건
- B 1: 패널이 장기간 구성되지 않아서 진행이 중지된 분쟁사안
- B 2: 제소국이 협의요청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쟁사안
- C: 패널절차의 정지가 1년을 초과하여 분쟁해결양해 12.12 조에 따라 패널의 권한이 소멸된 분쟁사안
- D: 뒤이은 새로운 협의요청으로 원래의 협의요청이 소멸된 분쟁사안

2. 제소국별 분쟁해결방식

(1)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

제소국의 입장에서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방식을 살펴보면, 미국이 12 개의 분쟁사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 (7 개), EC (4 개), 캐나다 (3 개), 일본 (2 개), 공동체소 (2 개), 한국 (1 개)의 순서이다. [표 VI 참조] 특히 미국은 PR 채택방식이 2 개에 불과하지만 PR/ABR 채택방식

이 10 개나 되어 상소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

협의 등 기타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된 방식을 살펴보면, 특히 분쟁당사국들 사이의 양자간 해결방식은 미국이 11 개의 분쟁사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 (8 개), EC (7 개), 기타선진국 (4 개), 캐나다 (3 개), 한국 (1 개), 일본 (1 개) 및 공동체소 (1 개) 순서이다. [표VI 참조]

표 VI. 제소국별 분쟁해결방식 (1999. 6. 1 현재)

분쟁해결상황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선진국	개도국 (한국)	공동체소	제소합계	비율 (%)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PR 및 ABR 채택	10	2	3			7	2	24	34%
	PR 채택 (상소없음)	2	2		2		1 (1)		7	10%
	소계	12	4	3	2	0	8 (1)	2	31	44%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	양자간 해결	11	7	3	1	4	9 (1)	1	36	51%
	진행이 중지된 사건			1			1		2	3%
	패널권한의 소멸		1						1	1%
	기타							1	1	1%
소계		11	8	4	1	4	10 (1)	2	40	56%
분쟁이 해결된 제소 합계		23	12	7	3	4	18 (2)	4	71	100%
비율		32%	17%	10%	4%	6%	26%	6%	100%	

표범례: 표 I 참조.

3. 피소국별 분쟁해결방식

(1)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

피소국의 입장에서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방식을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이 9 개의 분쟁사건으로 가장 많고, EC (7 개), 미국 (6 개), 일본 (5 개), 한국 (2 개), 기타선진국 (1 개)의 순서이다. [표VII 참조] 특히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이 피소된 경우에 PR 채택방식이 5 개로서 PR/ABR 채택방식의 4 개보다 다소 많아서 상소절차가 소극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피소된 경우에 모두 PR/ABR 채택방식으로 해결되어 상소절차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2)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

협의 등 기타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된 방식을 살펴보면, 특히 분쟁당사국들 사이의 양자간 해결방식은 한국을 제외한 개도국이 11개의 분쟁사건으로 가장 많고, EC (6개), 미국 (6개), 기타선진국 (6개), 일본 (4개), 한국 (3개)의 순서이다. [표Ⅶ 참조] 패널절차보다 양자간 해결방식이 선호된 일반적인 경향과 다르게, 일본이 피소된 경우에는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방식이 5개로서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방식의 4개보다 다소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표 Ⅶ. 피소국별 분쟁해결방식 (1999.6.1 현재)

분쟁해결상황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선진국	개도국 (한국)	피소합계	비율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PR 및 ABR 채택	5	7	1	4	1	6 (2)	24	34%
	PR 채택 (상소없음)	1			1		5	7	10%
	소계	6	7	1	5	1	11 (2)	31	44%
협의 등 기타 방식의 분쟁해결	양자간 해결	6	6		4	6	14 (3)	36	51%
	진행이 중지된 사건		2					2	3%
	패널권한의 소멸	1						1	1%
	기타		1					1	1%
	소계	7	9	0	4	6	14 (3)	40	56%
분쟁이 해결된 피소 합계		13	16	1	9	7	25 (5)	71	100%
비율		18%	23%	1%	13%	10%	35%	100%	

표범례: 표 I 참조.

Ⅲ. 분쟁해결절차 활용상황

1. 협의절차

(1) 회원국별 협의요청

1999년 6월 1일 현재 요청된 192개¹³⁾ 협의 중에서 미국이 약 30%에 해당

하는 58 개의 협의를 요청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EC (45 개), 캐나다 (13 개), 인도 (9 개), 일본 (7 개), 멕시코 (7 개), 브라질 (6 개)의 순서이다. [표 VIII 참조] 6 개 이상의 협의를 요청한 이들 7 개국의 145 개는 전체 협의요청건수인 192 개 중에서 약 76 %에 해당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의 개시가 특정 회원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회원국별 협의참가요청

1999년 6월 1일 현재 제소국이 아닌 회원국의 255 개 협의참가요청 중에서 일본이 약 13 %에 해당하는 33 개의 협의참가를 요청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미국 (32 개), EC (32 개), 캐나다 (30 개), 호주 (21 개), 스위스 (14 개), 뉴질랜드 (9 개), 한국 (8 개)의 순서이다.¹⁴⁾ [표 VIII 참조] Quad 그룹의 협의참가요청건수가 전체 255 개 중에서 127 개로서 약 절반에 해당하였다. 특히 일본은 미국 (DS 90), 호주 (DS 91), 캐나다 (DS 92), 뉴질랜드 (DS 93) 및 스위스 (DS 94)가 인도의 '농산품, 섬유 및 공산품 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사건에 협의참가하여 인도와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협의참가요청을 활용하였다.

13) 본고에서 협의요청을 통한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제소의 경우도 회원국별로 1건의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예컨대,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태국이 공동제소한 미국의 새우 및 새우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DS58)은 분쟁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개로 계산되지만, 회원국별 협의요청건수를 계산할 때는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이 각각 1개씩 협의요청을 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전체 협의요청건수는 단독제소 168 개에 공동제소의 회원국 (24 개국)을 합한 192 개가 되었다.

14) 분쟁당사국인 협의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은 동 협의에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익'(substantial trade interest)이 있는 경우 협의요청 회람 후 10일 내에 협의회원국들과 DSB에 협의에의 참가희망을 통고할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 4.11 조.

표 VIII. 회원국별 협의절차 활용상황 (1999년 6월 1일 현재)

협의요청				협의참가요청			
순위	회원국	요청건수*	비율	순위	회원국	요청건수	비율
1	미국	58 (4)	30.21%	1	일본	33	12.99%
2	EC	45	23.44%	2	미국	32	12.60%
3	캐나다	13 (1)	6.77%	2	EC	32	12.60%
4	인도	9 (1)	4.69%	4	캐나다	30	11.81%
5	일본	7	3.65%	5	호주	21	8.27%
5	멕시코	7 (3)	3.65%	6	스위스	14	5.51%
7	브라질	6	3.13%	7	뉴질랜드	9	3.54%
8	뉴질랜드	4 (1)	2.08%	8	한국	8	3.15%
8	태국	4 (2)	2.08%	9	멕시코	7	2.76%
10	호주	3 (1)	1.56%	10	페루	6	2.36%
10	스위스	3	1.56%	11	온두라스	4	1.57%
10	온두라스	3 (3)	1.56%	11	코스타리카	4	1.57%
10	과테말라	3 (3)	1.56%	11	에쿠아도르	4	1.57%
14	한국	2	1.04%	11	콜롬비아	4	1.57%
14	필리핀	2	1.04%	15	브라질	3	1.18%
14	칠레	2	1.04%	15	과테말라	3	1.18%
14	파나마	2	1.04%	15	홍콩 차이나	3	1.18%
14	헝가리	2	1.04%	15	파키스탄	3	1.18%
19	페루	1	0.52%	15	파나마	3	1.18%
20	코스타리카	1	0.52%	15	인도	2	0.79%
...
회원국 전체		192	100%	회원국 전체		255	100%

* 협의요청건수 중 공동제소건수는 괄호로 표시됨

2. 패널절차

(1) 회원국별 제소국으로서 패널절차 참가

1999년 6월 1일 현재 패널절차가 활용된 67개 분쟁사건 중에서¹⁵⁾ 미국이 약 27%에 해당하는 18개의 패널절차에 참가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EC(17개), 캐나다(6개), 일본(4개), 인도(3개), 브라질(3개), 멕시코(2개), 뉴질랜드(2개)의 순서이다.¹⁶⁾ [표IX 참조] Quad 그룹은 패널절차가 활용된 67개 분쟁사건 중에서 약 68%에 해당하는 45개의 패널절차에 제소국으로서 참가하였다.

15) 공동제소 중 패널이 설치되어 공동제소국이 동 패널절차에 공동으로 참가한 경우도 회원국별로 1건의 참가건수로 계산하였다. 공동제소 사건은 표 II 참조.

16) 한국은 미국의 한국산 1메가바이트 이상의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DS99)의 패널절차에서 제소국으로 참가하였다.

(2) 회원국별 제 3 당사국으로서 패널절차 참가

1999년 6월 1일 현재 패널절차가 활용된 67개 분쟁사건 중에서 약 54%에 해당하는 36개의 분쟁사건의 패널절차에서 126회의 제 3 당사국 참가가 허용되었다.¹⁷⁾ 이 중에서 미국이 약 17%에 해당하는 20회에 걸쳐 제 3 당사국으로서 참가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일본 (13회), 인도 (10회), 캐나다 (10회), 멕시코 (7회), 한국 (6회), 호주 (6회), EC (5회), 브라질 (5회)의 순서이다. [표IX 참조] 제 3 당사국 참가에서 개도국인 인도가 10회로서 적극적이었지만, 선진국인 EC는 5회로서 다소 소극적이었다. 특히 일본은 협의참가요청과 유사하게 패널절차의 제 3 당사국 참가에도 적극적이어서 자신의 분쟁 이외의 다른 회원국들의 분쟁해결에도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표 IX. 회원국별 패널절차 활용상황 (1999년 6월 1일 현재)

패널절차에 '제소당사국'으로 참가				패널절차에 '제 3 당사국'으로 참가			
순위	회원국	참가건수*	비율	순위	회원국	참가회수	비율
1	미국	18 (1)	26.87%	1	미국	20	16.67%
1	EC	17	25.37%	2	일본	13	10.83%
3	캐나다	6	8.96%	3	인도	10	8.33%
4	일본	4	5.97%	3	캐나다	10	8.33%
5	인도	3 (1)	4.48%	5	멕시코	7	5.83%
5	브라질	3	4.48%	6	한국	6	5.00%
5	멕시코	2 (1)	2.99%	6	호주	6	5.00%
5	뉴질랜드	2	2.99%	8	EC	5	4.17%
9	한국	1	1.49%	8	브라질	5	4.17%
9	태국	1 (1)	1.49%	10	태국	4	3.33%
9	온두라스	1 (1)	1.49%	10	싱가포르	4	3.33%
9	파테말라	1 (1)	1.49%	12	홍콩 차이나	3	2.50%
9	페루	1	1.49%	13	페루	2	1.67%
9	필리핀	1	1.49%	13	필리핀	2	1.67%
9	코스타리카	1	1.49%	13	폴롬비아	2	1.67%
9	에쿠아도르	1 (1)	1.49%	13	스위스	2	1.67%
9	칠레	1	1.49%	17	온두라스	1	0.83%
9	파키스탄	1 (1)	1.49%	17	파테말라	1	0.83%
9	말레이시아	1 (1)	1.49%	17	코스타리카	1	0.83%
9	베네수엘라	1	1.49%
	회원국 전체	67	100%		회원국 전체	126	100%

* 제소당사국의 참가건수 중 공동참가건수는 괄호로 표시됨

17) 패널의 담당사안에 실질적 이익을 가지며, DSB에 자국의 이익을 통고한 제 3 국은 패널에서 자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서면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가진다. 분쟁해결양해 10.2 조.

3. 상소절차

(1) 회원국별 상소절차 참가

1999년 6월 1일 현재 패널/상소기관보고서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31개¹⁸⁾ 분쟁사건(21개 분쟁사안) 중에서 24개 분쟁사건(17개 분쟁사안)이 제소국 또는 피소국에 의해서 상소되었다. [표 XIX 참조] 상소국으로서 상소절차에 참가한 전체 30개 중에서 미국이 약 23%에 해당하는 7개 분쟁사안의 상소절차에 참가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EC(4개), 캐나다(3개), 일본(2개), 과테말라(2개), 인도(2개), 브라질(2개), 한국(1개)의 순서이다.¹⁹⁾ [표 X 참조] Quad 그룹은 전체 30개 분쟁사안 중에서 약 53%에 해당하는 16개 분쟁사안의 상소절차에 상소국으로서 참가하였다.

(2) 회원국별 제3 당사국으로서 상소절차 참가분석

1999년 6월 1일 현재 상소절차가 활용된 24개 분쟁사건(17개 분쟁사안) 중에서 약 76%에 해당하는 13개 분쟁사안에서의 상소절차에서 42회의 제3 당사국 참가가 허용되었다.²⁰⁾ 이 중에서 EC가 약 14%에 해당하는 6회에 걸쳐 제3 당사국으로서 참가하여 가장 적극적이었고, 뒤이어 미국(4회), 일본(3회), 멕시코(2회), 노르웨이(2회), 인도(2회), 호주(2회)의 순서이다. [표 X 참조] Quad 그룹 중에서 캐나다가 유일하게 제3 당사국으로서 상소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고, 한국도 아직 상소절차에 제3 당사국으로서 참가하지 않았다.

18) 승소/패소상황에 관한 표 XIX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소국은 분쟁사안에 따라 1) 제소국만의 상소, 2) 피소국만의 상소, 및 3) 제소국과 피소국 모두의 상소로 유형화될 수 있다. 상소된 분쟁사안수는 17개이지만 상소국으로서 상소절차의 참가사안수는 30개가 된다.

19) 한국은 한국의 주류에 대한 세금(DS75, EC의 제소; DS84, 미국의 제소)의 상소절차에서 상소국으로 참가하였다.

20) 패널의 담당사안에 실질적 이익을 가진다고 통고한 제3 국은 상소기관에게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자국의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 17.4 조. 상소절차에 제3 당사국으로 참가한 회원국이 복수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3 당사국으로서 상소절차에 참가한 회수는 42개이다.

표 X. 회원국별 상소절차 활용상황 (1999년 6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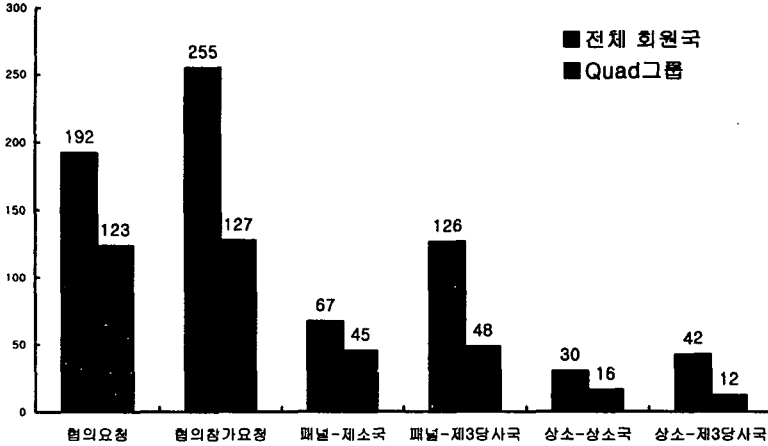
상소절차에 '상소국'으로 참가				상소절차에 '제3 당사국'으로 참가			
순위	회원국	참가사안수	비율	순위	회원국	참가회수	비율
1	미국	7	23.33%	1	EC	6	14.29%
2	EC	4	13.33%	2	미국	4	9.52%
3	캐나다	3	10.00%	3	일본	2	4.76%
4	일본	2	6.67%	3	멕시코	2	4.76%
5	파테말라	2	6.67%	3	노르웨이	2	4.76%
5	인도	2	6.67%	6	인도	2	4.76%
5	브라질	2	6.67%	6	호주	2	4.76%
5	한국	1	3.33%	6	뉴질랜드	1	2.38%
9	호주	1	3.33%	9	브라질	1	2.38%
9	아르헨티나	1	3.33%	9	코스타리카	1	2.38%
9	코스타리카	1	3.33%	9	에쿠아도르	1	2.38%
9	에쿠아도르	1	3.33%	9	홍콩 차이나	1	2.38%
9	온두라스	1	3.33%	9	태국	1	2.38%
9	멕시코	1	3.33%	9	베네주엘라	1	2.38%
9	필리핀	1	3.33%
회원국 전체		30	100%	회원국 전체		42	100%

4. Quad 그룹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상황

WTO 회원국 중에서 미국, EC, 일본 및 캐나다의 Quad 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였다. [차트Ⅱ 참조] 1999년 6월 1일 현재 Quad 그룹은 전체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협의를 요청한 비율은 64% (123개/192개)이고, 제소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한 비율은 67% (45개/67개)이며, 상소의 비율은 53% (16개/30개)이다. 또한 협의참가를 요청한 비율은 50% (127개/255개)이고, 제3당사국으로서 패널절차에 참가한 비율은 38% (48개/126개)이며, 제3당사국으로서 상소절차에 참가한 비율은 29% (12개/42개)이다.

이같이 Quad 그룹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이들이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자신의 통상이익의 보호에 적극적이었으며, 둘째, 이들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 및 물질적 자원을 보유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트 II. Quad 그룹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상황



IV. 제소사유와 분쟁대상인 대상협정

1. 제소사유

GATT 1947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에서 제소된 분쟁의 대부분은 다른 체약국이 GATT 1947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GATT 1947에 따른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는 소위 '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 (violation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사건이었다. WTO 분쟁해결제도에서도 전체 173 개 분쟁사건 모두가 이같이 전통적인 '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 사건이어서 제소사유에 있어서 GATT 1947 체제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WTO의 173 개 분쟁사건 중에서 7 개 분쟁사건에서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 (non-violation nullification and impairment)가 '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와 함께 주장되었다. [표 XI 참조] 이러한 7 개의 분쟁사건 중에서 6 개의 분쟁사건을 미국이 제소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이 비위반의 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XI. 비위반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주장된 분쟁 (1999. 6. 1 현재)

사안	DS 번호	제소국	피소국	제소사유	분쟁상황	국문 사례명	쟁점 규정
1	44	미국	일본	GATT1994 XXIII:1(a)조, XXIII:1(b)조	패널결정에 따른 분쟁해결 (제소국 의 패소)	소비자 사진필름 및 용지에 영 향을 미치는 조치	GATT III, XI
2	45	미국	일본	GATT1994 XXIII:1(a)조, XXIII:1(b)조	협외 중	유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 치	GATS III, XVI
3	51	일본	브라질	GATT1994 XXIII:1(a)조, XXIII:1(b)조	협외 중	특정 자동차 투자조치	GATT I:1, III:4, XI:1
4	52	미국	브라질	GATT1994 XXIII:1(a)조, XXIII:1(b)조	협외 중	자동차분야에서의 무역과 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조치	GATT I:1, III:4; SCA 3, 27.4; TRIMS 2
	65	미국					
5	172	미국	EC	GATT1994 XXIII:1(a)조, XXIII:1(b)조	협외 중	항공운영시스템 개발에 관한 조 치	SCA 5(b)(c), 6
	173	미국	프랑스				

2. 분쟁대상인 GATT 1994

1999년 6월 1일 현재 173개 분쟁사건의 67%에 해당하는 115개 분쟁사건에서 GATT 1994의 규정이 단독으로 또는 반덤핑협정 등 다른 대상협정과 함께 원용되었다. [표 XIII 참조] GATT 1994의 조문별 분쟁상황을 살펴보면, III조 (내국민대우)가 60회로서 가장 많이 원용되었고, XI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가 49회, I조 (최혜국대우)가 46회 원용되었다.[표XII 참조] GATT1994가 원용된 115개 분쟁사건 중에는 특정 조문이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GATT 1994의 위반만이 주장된 4건의 분쟁사건이 포함되었다.²¹⁾

21) 말레이시아의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수입품에 대한 금지(DS1, 싱가포르의 제소), 일본의 음반 보호에 관한 조치(DS28, 미국의 제소: TRIPS 협정 14조도 함께 원용됨), EC의 쌀에 대한 UR 약속의 이행(DS25, 우루과이의 제소), 과테말라의 맥시코산 포트랜드 시멘트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DS60, 멕시코의 제소: 반덤핑협정 2조, 3조, 5조 및 7.1조와 함께 원용됨).

표 XII. GATT 1994 조문별 분쟁상황 (1999년 6월 30일 현재)

GATT 조문	원용 회수	원용회수 비율	분쟁사건수 비율
III조	60	22.6%	34.7%
XI조	49	18.5%	28.3%
I조	46	17.4%	26.6%
II조	28	10.6%	16.2%
X조	23	8.7%	13.3%
XIII조	14	5.3%	8.1%
VI조	13	4.9%	7.5%
XVIII조	6	2.3%	3.5%
VII조	5	1.9%	2.9%
VIII조	5	1.9%	2.9%
XXIV조	4	1.5%	2.3%
V조	3	1.1%	1.7%
XVI조	3	1.1%	1.7%
XVII조	3	1.1%	1.7%
XII조	1	0.4%	0.6%
XXVII조	1	0.4%	0.6%
XXVIII조	1	0.4%	0.6%
합계	265	100%	-

3. 분쟁대상인 대상협정

1999년 6월 1일 현재 분쟁대상인 전체 대상협정수가 318개로서 분쟁사건 1개당 약 1.8개의 대상협정이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표XIII 참조] 이러한 318개 대상협정 중에서 GATT 1994가 원용된 건수는 115개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에서 상품무역이 여전히 WTO 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인 TBT 협정, SPS 협정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은 전체 원용된 대상협정수의 19%에 해당하는 57개를 차지하여 다소 활발하게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세이프가드조치협정이 원용된 소위 '무역구제사건'은 전체 원용된 대상협정수의 약 17%에 해당하는 52개를 차지하여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섬유류협정은 전체 원용된 대상협정수의 2.8%에 해당하는 9개를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2개는 분쟁해결양해 4.4조에 따른 협의요청에 의하지 않고 직접 패널설치가 요청되었다.²²⁾ 그러나, 선적전검사협정은 단 한차례도 원용되

22) 미국의 소녀 및 여성용 모직코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DS32, 인도의 제소), 미국의 짠 모직 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DS33, 인도의 제소) 참조. 섬유감시기관의 추가적 권고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원국

지 않았다.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분쟁상황을 살펴보면, Quad 그룹 특히 미국과 EC가 이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제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XIV, XV 참조] TRIPS 분쟁과 GATS 분쟁을 합한 25개 분쟁사건 중에서 미국은 공동제소를 포함하여 64%에 해당하는 16개에 대하여 제소하였고, EC는 24%에 해당하는 6개에 대하여 제소하였다. 한국은 아직 이들 분야의 분쟁에 빠지지 않는 않았다. 개도국은 이들 분야에서 제소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TRIPS 분쟁의 경우 전체 18개 분쟁사건 중에서 6개에 대하여 제소를 받아 33%의 높은 피소비율을 나타내었다. 개도국은 GATS 분쟁에서는 피소되지 않았다.

표 XIII. WTO협정별 분쟁상황 (1999년 6월 1일 현재)

협정		원용 회수	대상협정수 비율*
WTO창설협정		2	0.6%
부속서 IA	GATT1994	115	36.2%
	농업협정	31	9.7%
	보조금협정	31	9.7%
	TBT협정	21	6.6%
	수입허가절차협정	21	6.6%
	SPS협정	15	4.7%
	반덤핑협정	15	4.7%
	TRIMS협정	11	3.5%
	섬유의류협정	9	2.8%
	세이프가드조치협정	6	1.9%
	관세평가협정	5	1.6%
	원산지규정협정	3	0.9%
	가능조항	1	0.3%
신격전검사협정	0	0.0%	
부속서 IB	GATS	7	2.2%
부속서 IC	TRIPS협정	18	5.7%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3	0.9%
부속서 4	정부구매협정	4	1.3%
분쟁대상인 총 대상협정수		318	100%
총 분쟁사건수		173	-

* 대상협정수 비율은 특정 협정의 원용회수를 분쟁대상인 총 대상협정수로 나눈 백분율임

은 GATT 1994 XXIII:2 조를 원용할 수 있다. 섬유의류협정 8.10 조.

표 XIV. GATS분쟁의 제-피소상황 (1999. 6. 1 현재)

피소국 \ 제소국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 선진국	개도국 (한국)	제소 합계	비율
미국	-	1		1			2	29%
EC	1	-	1				2	29%
캐나다			-				0	0%
일본			1	-			1	14%
기타 선진국							0	0%
개도국							0	0%
공동제소		2					2	29%
피소합계	1	3	2	1	0	0	7	100%
비율	14%	43%	29%	14%	0%	0%	100%	-

표 XV. TRIPS분쟁의 제-피소상황 (1999. 6. 1 현재)

피소국 \ 제소국	미국	EC	캐나다	일본	기타 선진국	개도국 (한국)	제소 합계	비율
미국	-	6	1	1		4	12	67%
EC	1	-	1	1		1	4	22%
캐나다		1	-				1	6%
일본				-		1	1	6%
기타 선진국							0	0%
개도국 (한국)							0	0%
공동제소							0	0%
피소합계	1	7	2	2	0	6	18	100%
비율	6%	39%	11%	11%	0%	33%	100%	-

V. 분쟁해결제도의 유용성

1. 분쟁해결의 소요시간

(1) 개관

GATT 1947체제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쟁해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이다. WTO의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절차마다 일정한 소요 시간을 규정하고, 패널설치의 거부, 패널/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 거부 및 보복

조치의 허가 거부에 있어서 총의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상소기관보고서가 채택되며 또한 보복조치가 허가되어 전체적으로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예측가능하게 되었다.²³⁾

아래에서 패널/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개 분쟁사건 [표 IV 참조]의 패널설치일과 패널보고서 회람일,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 및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일 사이의 소요시간을 분석하여 WTO분쟁해결제도의 시간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표 XVI, XVII 참조]

(2) 패널설치일에서 패널보고서 회람일까지 소요시간

분쟁해결양해는 패널의 구성과 위임사항이 합의된 날부터 최종보고서가 분쟁당사국에게 제출되는 날까지 패널의 검토수행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²⁴⁾, 어떠한 경우에도 패널설치로부터 회원국에 대한 패널보고서의 회람까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²⁵⁾

1999년 6월 1일 현재 전체 173개 분쟁사건 중에서 40개의 분쟁사건에 대한 패널보고서가 회원국에게 회람되었다.²⁶⁾ 이러한 40개 분쟁사건에 대하여 패널설치일부터 패널보고서 회람일까지 평균 11개월 4일이 소요되었고 불과 8개 분쟁사건만이 9개월의 시한을 준수하였다. 또한,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31개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평균 10개월 29일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불과 7개 분쟁사건만이 9개월의 시한을 준수하였다.

(3) 패널설치일에서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까지 소요시간

분쟁해결양해는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DSB가 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관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날짜의 소요시간은 패널보고서가 상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을, 상소된 경우

23) 분쟁상황의 신속한 해결은 WTO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정당한 균형을 유지에 필수적이다. 분쟁해결양해 3.3 조.

24) 분쟁해결양해 12.8조. 단,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경우를 포함한 긴급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분쟁당사국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id.

25) 분쟁해결양해 12.9 조.

26) 패널보고서의 회람 건수는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31개, 진행중인 사안 중에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6개 및 양자간 해결된 사안 중 분쟁이 해결된 후에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3개 (EC의 가리비의 품명 사건(DS7, 캐나다의 제소; DS12, 페루의 제소; DS14, 칠레의 제소))를 포함한다.

에는 12개월을 일반적으로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²⁷⁾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개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패널 설치일부터 패널 또는 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까지 평균 14개월 23일이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패널보고서만 채택된 7개의 분쟁사건에 대하여 평균 13개월 16일,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가 모두 채택된 24개에 대하여 평균 15개월 2일이 소요되었다. 특히 9개월 또는 12개월의 시한을 준수한 분쟁사건은 단 2개에 불과하였다.

(4) 협의요청일에서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까지 소요시간

분쟁해결양해는 협의요청일부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일까지의 소요시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내에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패널설치요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에 패널이 설치되므로,²⁸⁾ 협의요청일부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관보고서의 채택일까지 패널보고서가 상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2~13개월, 상소된 경우에는 15~1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²⁹⁾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개 분쟁사건 중에서 분쟁해결양해 4.4조에 따라 협의가 요청되었던 30개 분쟁사건³⁰⁾에 대하여 협의요청일부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까지 평균 19개월 20일이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패널보고서만 채택된 7개에 대하여 평균 20개월 11일,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가 모두 채택된 24개에 대하여 평균 19개월 13일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소요시간을 훨씬 초과하였다. 다만, 패널보고서만 채택된 경우가 패널보고서와 상소기관보고서가 모두 채택된 경우보

27) 이러한 기간은 '협의요청-패널설치요청 기간'(60일/ 2개월), '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 기간'(약 1~2개월), 및 '패널설치-패널보고서 채택 기간'(상소되지 않은 경우, 9개월)을 합하여 계산되었다. 분쟁해결양해 20조 참조.

28) 제소국의 패널설치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는 DSB 회의에서 총의로써 패널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늦어도 다음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된다. 분쟁해결양해 6.1 조와 동 조의 주 7 참조.

29) 분쟁해결양해 20조 참조. 패널 또는 상소기관이 분쟁해결양해 12.9조 또는 17.5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시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시간만큼 동 기간에 추가된다. id.

30) 미국의 짠 모직 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DS33, 인도의 제소에서 인도는 섬유류협정 8.10조(섬유감시기관의 추가적 권고에 의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의 회원국의 GATT 1994 XXIII:2 조 원용)에 따라 분쟁해결양해 4.4조에 따른 협의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점은 의외이다. 이는 패널설치 이후의 절차에서 패널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쟁사건에서 패널설치가 상당히 지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5) 패널설치일에서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일까지 소요시간

분쟁해결양해는 패널 또는 상소기관이 분쟁해결양해 12.9 조 또는 17.5 조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 DSB가 패널을 설치한 날부터 패소국의 DSB의 결정과 권고의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³¹⁾ 이렇게 보고서의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시간이 15 개월의 기간에 추가되지만, 분쟁당사국들이 예외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전체 기간은 18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³²⁾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 개 분쟁사건 중에서 19 개에 대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되었는데, 패널설치일부터 합리적 이행기간의 결정일까지 평균 18 개월 5 일이 소요되었다. 특히 이 19 개의 분쟁사건 중에서 단 2 개에 대하여 원칙적인 15 개월의 소요시간이 준수되었다. 대부분의 분쟁사건에서 보고서 제출시한이 연장되었으며, 8 개에 대하여는 최장 18 개월의 시한이 초과되었다.

(6) 분쟁해결 전체소요시간

분쟁해결양해는 분쟁해결의 전체소요시간이라는 개념과 이러한 시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의요청부터 DSB의 결정과 권고가 중국적으로 이행되는데 소요된 시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분쟁해결의 전체소요시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요청일부터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까지 패널보고서가 상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12~13 개월, 상소된 경우에는 15~16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합리적 이행기간이 패널/상소기관보고서 채택일부터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³³⁾, 패널보고서가 상소되지 않은

31) 분쟁해결양해 21.4 조.

32) id.

33) 분쟁해결양해 21.3(c) 조.

경우에는 27~28개월(2년 3개월 ~ 2년 4개월), 상소된 경우에는 30~31개월(2년 6개월 ~ 2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31개 분쟁사건 중에서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된 19개에 대한 전체소요시간은 평균 33개월 8일(2년 9개월 8일)로 산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2년 남짓 소요된 분쟁사건도 있으나,³⁴⁾ 3년 9개월여나 소요된 분쟁사건도 있었다.³⁵⁾ 패널 또는 상소절차를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구하는 경우에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를 얻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제소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분쟁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7) 평가

대부분의 분쟁사건에서 분쟁해결양해에 설정된 원칙적인 소요시간보다 상당히 하게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패널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XVI, XVII 참조].

34) 아르헨티나의 신발, 섬유, 의류 및 기타 항목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DS56, 미국의 제소), EC의 특정 가금류 제품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DS69, 브라질의 제소).

35) 호주의 캐나다산 연어 수입금지(DS18, 캐나다의 제소). 그러나 동 사건의 경우에 협의요청 후 패널설치가 상당히 지체되었다.

표 XVI.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소요시간 (1999. 6. 4 현재)

DS 번호 ()	A. 협의 요청일	B. 패널 설치일	C. 패널보고서 회람일	C-B ^R (9개월)	D. 보고서 채택일	D-A	D-B (9 또는 12개월)	E.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일 [등 기간]	E-B	분쟁해결 소요 전체시간 ^h
2	95-1-24	95-04-10	96-01-29	9/20	96-05-20 (PR & ABR)	15/26	13/09	96-12-03 [96.5.20- 97.8.20, 15개월]	19/25	2/6/27
4	95-4-10	95-05-31	96-01-29	7/30	96-05-20 (PR & ABR)	13/09	11/20	96-12-03 [96.5.20- 97.8.20, 15개월]	18/5	2/4/12
8	95-6-21	95-09-27	96-07-11	9/14	96-11-01 (PR & ABR)	16/13	13/04	97-02-14 [97.2.14- 98.5.14, 15개월]	16/20	2/10/23
10	95-7-7	95-09-27	96-07-11	9/14	96-11-01 (PR & ABR)	15/27	13/04	97-02-14 [97.2.14- 98.5.14, 15개월]	16/20	2/10/07
11	95-7-7	95-09-27	96-07-11	9/14	96-11-01 (PR & ABR)	15/27	13/04	97-02-14 [97.2.14- 98.5.14, 15개월]	16/20	2/10/07
18	95-10-5	97-04-10	98-06-12	14/03	98-11-03 (PR & ABR)	37/01	18/28	99-02-23 [98.11.6- 99.7.6, 8개월]	22/14	3/9/01
22	95-11-30	96-03-05	96-10-17	7/13	97-03-20 (PR & ABR)	15/20	12/14	-	N.A. ¹	N.A.
24	95-12-22	96-03-05	96-11-08	8/4	97-02-25 (PR & ABR)	14/06	11/22	-	N.A.	N.A.
26	96-1-26	96-05-20	97-08-18	14/30	98-02-13 (PR & ABR)	24/18	20/25	98-05-29 [98.2.13- 99.5.13, 15개월]	24/8	3/3/17
27	96-2-5	96-05-08	97-05-22	12/13	97-09-25 (PR & ABR)	19/20	16/19	98-01-07 [97.9.25- 99.1.1, 15개월]	19/31	2/10/26
31	96-3-11	96-06-19	97-03-14	8/24	97-07-30 (PR & ABR)	16/20	13/09	97-09-15 [97.7.30- 98-10-30, 15개월]	14/28	2/7/20
33	-	96-04-17	97-01-06	8/20	97-05-23 (PR & ABR)	N.A.	13/04	-	N.A.	N.A.
44	96-6-13	96-10-16	98-03-31	17/14	98-04-22 (PR)	12/08	18/06	-	N.A.	N.A.
48	96-6-28	96-10-16	97-08-18	10/01	98-02-13 (PR & ABR)	19/17	15/29	98-05-29 [98.2.13- 99.5.13, 15개월]	19/12	2/10/14
50	96-7-2	96-11-20	97-09-05	9/15	98-01-13 (PR & ABR)	18/16	13/25	98-04-21 [98.1.16- 99.4.19, 15개월]	16/31	2/9/17
54	96-10-3	97-06-12	98-07-02	12/19	98-07-23 (PR)	21/19	13/09	98.12.07 [98.7.23- 99.7.23, 12개월]	17/26	2/9/19
55	96-10-4	97-06-12	98-07-02	12/19	98-07-23 (PR)	21/18	13/09	98.12.07 [98.7.23- 99.7.23, 12개월]	17/26	2/9/18
56	96-10-4	97-02-25	97-11-25	8/29	98-04-22 (PR & ABR)	18/18	13/24	98-06-15 [6개월과 약 8개월 ¹]	15/19	2/2/29
58	96-10-8	97-02-25	98-05-15	14/19	98-11-03 (PR & ABR)	24/28	20/10	-	N.A.	N.A.
59	96-10-8	97-07-30	98-07-02	11/02	98-07-23 (PR)	21/14	11/23	98.12.07 [98.7.23- 99.7.23, 12개월]	17/26	2/9/14
60	96-10-17	97-03-20	98-06-19	14/31	98-11-25 (PR & ABR)	25/07	20/06	-	N.A.	N.A.
62	96-11-8	97-02-25	98-02-05	11/10	98-06-22 (PR & ABR)	19/13	15/26	-	N.A.	N.A.
64	96-11-29	97-06-12	98-07-02	12/19	98-07-23 (PR)	19/23	13/09	98.12.07 [98.7.23- 99.7.23, 12개월]	17/26	2/7/23
67	97-2-14	97-03-20	98-02-05	10/17	98-03-22 (PR & ABR)	16/07	15/03	-	N.A.	N.A.
68	97-2-14	97-03-20	98-02-05	10/17	98-03-22 (PR & ABR)	16/07	15/03	-	N.A.	N.A.
69	97-2-24	97-07-30	98-03-12	7/12	98-07-23 (PR & ABR)	16/28	11/23	98-10-20 [98.7.23- 99.3.31, 약 8개월]		
75	97-4-2	97-10-16	98-09-17	11/01	99-02-17 (PR & ABR)	22/16	16/03	99.06.04 [99.2.17- 2000.1.31, 11개월 2	19/18	2/9/30

- f. 각 사건의 개요는 표 IV 참조.
- g. 분쟁해결에 소요된 전체시간 이외의 소요시간은 '개월수/일수'로 표시되고,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시한을 준수한 사건은 그 소요시간을 음영으로 표시함.
- h. 분쟁해결에 소요된 전체시간은 협의요청일부터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소요시간은 '년수/개월수/일수'로 표시됨 (예컨대 2/6/27은 2년 6개월 27일을 의미함).
- i. N.A. : 소요시간 산정 불가.
- j. 섬유와 의류에 대한 증가세에 대한 결정의 이행은 180일 (98.4.22-98.10.19), 통계세에 대한 결정의 이행은 240일 (98.4.22-99.1.1)이 부여됨.

표 XVII.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절차별 평균소요시간
(1999. 6. 4 현재)

기간	분쟁 사건수	설정된 소요시간	평균소요시간
패널설치일 ~ PR 회람일	31	9개월	10개월 29일
패널설치일 ~ PR 또는 PR/ABR 채택일	31	9-12개월	14개월 23일
- 패널설치일 ~ PR 채택일	7	9개월	13개월 16일
- 패널설치일 ~ PR/ABR 채택일	24	12개월	15개월 2일
협의요청일 ~ PR 또는 PR/ABR 채택일	30	12-16개월 (추정)	19개월 20일
- 협의요청일 ~ PR 채택일	7	12-13개월 (추정)	20개월 11일
- 협의요청일 ~ PR/ABR 채택일	23	15-16개월 (추정)	19개월 13일
패널설치일 ~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일	19	15개월 (최장 18개월)	18개월 5일
분쟁해결 전체소요시간 (협의요청일 ~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일)	19	27개월-31개월 (추정)	33개월 8일 (추정)

2. 패널/상소절차의 승소율

(1) 패널절차의 승소율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21개 분쟁사안 (31개 분쟁사건) 중에서 90.5%에 해당하는 19개 분쟁사안 (29개 분쟁사건)에서 패널은 승소 (13개: 61.9%) 또는 일부 승소 (6개: 28.6%)의 결정을 내리고, 9.5%에 해당하는 2개 분쟁사안에서 패소 결정을 내렸다. [표XVIII과 표XIX 참조] 패널절차에서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³⁶⁾ 제소국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제소하고 또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소절차의 승소율

패널 또는 상소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결된 21개의 분쟁사안 (31개 분쟁사건) 중에서 17개 분쟁사안 (24개 분쟁사건)에서 상소기관의 결정이 내려졌다.³⁷⁾ 상소기관은 17개 분쟁사안 중에서 82.4%에 해당하는 14개 분쟁사안에

36) 패널절차에서의 승소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패널 결정을 승소, 일부 승소 및 패소 결정의 3가지로 구분한다. 승소 결정은 제소국에 유리한 패널의 결정에 피소국이 승복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이고, 일부 승소 결정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주된 법적 주장이 각각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이며, 패소 결정은 제소국의 주된 법적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서 승소 (3개 : 17.6%) 또는 일부 승소³⁸⁾ (11개 : 64.7%)의 결정을 내리고, 17.6%에 해당하는 3개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패소 결정을 내렸다. [표XVIII과 표XIX 참조] 이렇게 상소절차에서 승소율이 높은 것은 법적 쟁점에 관한 패널의 결정에 상당한 경우 문제가 있었고³⁹⁾, 상소국의 상소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상소기관에 의한 WTO 법의 통일적 해석과 제2심으로서의 큰 역할이 확인된다.

표 XVIII. 패널 및 상소절차의 승소율 (1999. 6. 1 현재)

절차	승소	일부 승소	패소	합계
패널절차	61.9% (13개 분쟁사안)	28.6% (6개 분쟁사안)	9.5% (2개 분쟁사안)	100% (21개 분쟁사안)
상소절차	17.6% (3개 분쟁사안)	64.7% (11개 분쟁사안)	17.6% (3개 분쟁사안)	100% (17개 분쟁사안)

* 각 사건의 개요는 표 IV 참조

표 XIX. 패널/상소기관 결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승소/패소상황

사안	DS 번호*	제소국	피소국	패널 결정	상소국	상소기관의 결정
1	2	베네주엘라	미국	승소	피소국	일부 승소 [수정 지지]
	4	브라질				
2	8	EC	일본	승소	피소국과 일부 제소국 (미국)	일부 승소 (일본) [수정 지지]
	10	캐나다				
	11	미국				
3	18	캐나다	호주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호주) [일부 지지 (일부 파기)]
4	22	필리핀	브라질	패소	제/피소국	패소 (필리핀) [전부 지지]
5	24	코스타리카	미국	승소	제소국	승소 [결정 수정]
6	26	미국	EC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EC) [일부 지지 (일부 파기)]
	48	캐나다				
7	27	미국, 멕시코, 에쿠아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EC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EC) [일부 지지 (일부 파기)]

- 37) 상소기관의 결정은 표 XIX에서 알 수 있듯이, 패널결정의 1) 전부 지지, 2) 수정, 3) 수정 지지, 4) 일부 지지 (일부 파기), 5) 전부 파기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38) 패널절차에서의 제소국과 피소국이 모두 상소국인 경우에 패널 결정의 패소국을 기준으로 승소 또는 패소를 인정하였다. 예컨대 DS18에서 캐나다 (제소국)와 호주 (피소국)가 모두 상소하였지만, 패널절차에서 패소했던 호주의 주장이 상소절차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호주 (패소국)가 일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 39) 특히 EC, 영국, 아일랜드의 특정 컴퓨터 장치의 관세분 (각각 DS62, DS67, DS68)에서 상소기관은 상소국인 EC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패널의 결정을 전부파기하였다.

8	31	미국	캐나다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캐나다) [일부 지지 (일부 파기)]
9	33	인도	미국	승소	제소국	패소 [전부 지지]
10	44	미국	일본	패소	-	-
11	50	미국	인도	승소	피소국	일부 승소 [수정 지지]
12	54	EC	인도네시아	승소	-	-
	55	일본				
	59	미국				
	64	일본				
13	56	미국	아르헨티나	승소	피소국	일부 승소 [수정 지지]
14	58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미국	승소	피소국	일부 승소 [일부 지지 (일부 파기)]
15	60	멕시코	과테말라	승소	피소국	승소 [패널설치요청의 특정성 요건 미충족 결정]
16	62	미국	EC	승소	피소국 (EC)	승소 [전부 파기]
	67	미국	영국			
	68	미국	아일랜드			
17	69	브라질	EC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EC) [일부 지지 (일부 파기)]
18	75	EC	한국	승소	피소국	패소 [전부 지지]
	84	미국				
19	76	미국	일본	일부 승소	피/제소국	일부 승소 (일본) [일부 지지 (일부 파기)]
20	79	EC	인도	승소	-	-
21	99	한국	미국	승소	-	-

* 각 사건의 개요는 표 IV 참조

3. 보복조치의 허가

GATT 1947체제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보복(제재)조치가 허용된 경우는 오직 한 두건의 분쟁에 지나지 않았다.⁴⁰⁾ 1999년 6월 1일 현재 WTO에서는 DSB가 EC의 바나나의 수입, 판매, 유통에 관한 체제 (바나나사건) (DS 27)과 EC의 육류 및 육류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호르몬사건) (DS 26, 미국의 제소; DS 48, 캐나다의 제소)에서 보복조치를 허가하였다. [표 XX 참조] 이들 두 보복조치는 모두 1999년에 허가되었으며, 미국이 EC에 대하여 제소한 분쟁사건인 점에 특색이 있다

40) 보복조치가 허가된 가장 분명한 경우는 네덜란드의 XXIII:2 조에 따른 조치(BISD 1S/62, 1953)이며, 미국/EEC의 가금류 협상(소위 'Chicken War Case': BISD 12S/65, 1964)도 보복조치가 허용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개정판, 1997), p.30 주 128 참조.

표 XX. 허가된 보복조치 (1999. 7. 31 현재)

DS 번호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일	제소국의 의무정지 허가 요청일 (22.2 조)*	피소국의 정지수준에 대한 중재 요청일 (22.6 조)	중재 결정일 (22.7 조)	제소국의 의무정지 허가 재요청일 (22.7 조)	DSB의 의무정지 허가일 (22.7 조)	결정된 의무정지의 수준
27	1999.1.1	1999.1.14 [US\$520 백만] **	1999.1.29	1999.4.6***	1999.4.7	1999.4.19	US\$191.4 백만
26	1999.5.13	1999.5.17 [US\$202 백만]	1999.6.2	1999.7.12	1999.7.15	-	US\$116.8 백만
48		1999.5.20 [Can\$75 백만]	1999.6.2		1999.7.15	-	Can\$11.3 백만

VI. 結論

본고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였다. 위에서의 분석의 결과, 특히 다음의 사항이 특기할 만하다. 첫째, 미국, EC, 일본 및 캐나다의 Quad 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개도국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패널절차에 의한 경우보다 분쟁당사국 양자간 협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넷째, 상소절차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능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회원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여전히 GATT 1994가 분쟁대상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이 원용되며, 서비스무역 (GATS)과 지적재산권 (TRIPS 협정) 분야의 분쟁에서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여섯째, 패널절차와 상소절차의 승소율이 높다. 따라서 제소국의 준비가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훌륭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제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일곱째, 대체로 분쟁의 해결에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제소국의 입장에서는 패널 등의 제3자 개입보다는 분쟁당사국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특히 미국과 EC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과감하게 보복

조치가 허가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반 동안 WTO 분쟁해결제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통상국익의 수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n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r the first four and a half years**

Park, No Hyoung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of-play of WTO dispute settlement for first four and a half years. Remarkable points found on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Quad consisting of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Community (EC), Canada and Japan has participated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WTO member. Second, among developing country members some leading countries such as Korea, Brazil and India have relied actively upon the mechanism to claim and defend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rules. Third, bilateral dispute settlements generally have been preferred to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s by the panel or Appellate Body. Fourth, observation of the Appellate Body proceedings well shows WTO members' strategy to use every process available to them. Fifth, the provisions of GATT 1994 have been most frequently invoked by the members. GATS and TRIPS Agreement disputes are mainly involved in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S. and the EC. Sixth, very high winning ratio in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process indicates that complaining parties review the possibility to get favorable rulings even before referring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 (DSB) and prepare for the case very thoroughly. Seventh, roughly speaking, disputes were settled within two or three years. Therefore, seeking bilateral dispute settlement can be more advantageous to a complaining party than referring to a panel or an arbitrator because of low costs and short time period in

dispute settlement. Finally, the DSB approved retaliatory actions for winning complaining parties against the defending parties who had rejected implementation of its rulings and recommendations.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s been operated very successfully for the first four and a half years. It is hoped that continued study on state-of-play of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will be contributory to improved national interest of Korea.

Key Words :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